

2016년도 김포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7. 8.~ 7. 15.(6일간)
- 감사분야 : 2013년 6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계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4건	13건(45명)	2건(1,500천원)	3	11	-	12	33	-	1,500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자격증 가점평정 부적정

- **(자격가점 경과규정)** 소방위 ○○○이 2011년 7월 4일 취득한 잠수기능사 면허는 개정 당시의 부칙 경과규정에 의거 당해계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시 0.25점을 부여한다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개정이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가점평정 시 각각 0.25점의 가점을 누락하여 평정한 사실이 있고,
- **(자격증 적용)**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적용제한 란에 "None(제한없음)"으로 기재된 것만 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Boat Only" 면허에 대해 0.2점을 부여

※ **【관련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점평정)
소방공무원 가점 평정규정 제4조(자격증 가점평정)

○ (예산·회계) 정수기 등 3종 렌탈요금 선납지출 등 업무처리 미흡

- 선금 지급은 운임 및 사례금,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여비, 관공서에 지급하는 경비 등 그 성질상 선금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나, 선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수기 등의 렌탈 계약 건에 대하여 1년분의 사용료 전액을 선납으로 지출함.

※ 선납대상 예시 ☞ 수도요금, 전기요금, 자동차세 등의 공공요금. 단, 예산절감이 가능할 경우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과 개선금),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선금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제3장(비목별 세부집행지침)

○ (재난대응·안전)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공기 자체점검 미실시

-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14조(공기 성분 분석 및 위생 검사 등) 제1항 호흡용으로 사용되는 충전공기는 매년 자체검사 1회, 전문시험기관의 정밀분석 1회 총 2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김포소방서에서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기충전기 7대의 공기호흡기 용기 충전공기의 자체검사를 2014~2015년 총 2회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관련규정】**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14조

○ (예방·민원)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 및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소홀

-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정)**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영업장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비상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및 주된 출입구만 화재감지기와 연동, 정전시 자동·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일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도, A 골프연습장의 비상구를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가 아닌 자동문으로 설치하였고, B골프연습장은 비상구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데도 영업장을 임의로 구획하여 부적정하게 완비증명서를 발급
- **(안전시설등 유지·관리 소홀)** 다중이용업주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는데도, C 일반음식점은 주출입구 변경(훼손) 및 비상구 내부피난통로에 칸막이 설치하여 영업중이며, 고시원의 창문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D고시원은 오픈형 발코니 임의구획에 따른 창문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중이고, 2층 의원 용도를 고시원으로 사용중.

※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시설등)

수범사례 1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

□ **추진개요**

- 화학물질 유증기 유출 사고(15.04.22. 에틸아크릴레이트) : 악취발생, 주민 6명 이송
- 화학물질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비·대응대책 수립 필요

□ **현황 및 실태**

총 계	위험물 취급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대상					
	소계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저장소	소계	사용업	판매업 (알선)	제조업	보관 저장	운반업
1,017	975	38	108	44	783	44	21	17(7)	3	2	1

-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부족 및 중화제 등 방재장비 자체보유 미흡
-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파악 및 현장조치 능력 부족

□ **추진사항**

- 화학물질 유증기 유출사고 방지 안전관리 추진(15.05.13.~06.22./총 44개소)
 - 대응관리카드 작성 및 상황실 비치 활용 *품목별 대응요령, 중화제 현황 등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능력 향상 추진
 - 중화제 살포기 시연회(15.06.26. 50명 참석)
 - 천진항 폭발 사고 관련 특별교육(15.08.17~18. 화학물질 사고대비, 100명 참석)
 - 화학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훈련(15.05.19 ~ 20. 구조특별훈련, 26명 참석)
 - 화학물질 정보시스템 및 화학물질 사고상황 공유 모바일 앱 설치(전 직원)



□ **기대효과**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자체 초기대응력 확보로 대형사고 예방

수범사례 2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중계흡수관(65mm×5m) 제작

□ **추진개요**

- 지역 여건상 김포항(경인운하)·농수로·저수지가 많은 자연수리를 활용하기 위하여 중계흡수관을 제작·운용 함으로서 연소확대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 코져 함.

□ **현황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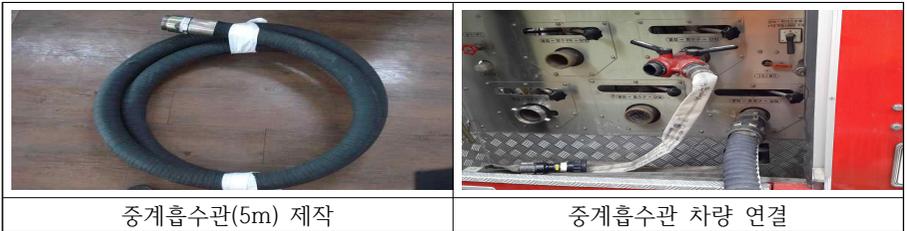
- 김포항(경인운하)·농수로·저수지 등 자연수리 소방용수조건 양호
- 농촌지역 화재 발생시 상수도 배관 수압 저하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 미흡

□ **추진사항**

- 중계흡수관(65mm×5m) : 4개 제작·배부
- 배부장소 : 외곽119안전센터(4개소)

□ **기대효과**

- 중계흡수관(길이 5m)을 제작하여 저수지 등 자연수리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 보급된 짧은 중계흡수(길이 2m)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통해 "소화전 확대설치"와 같은 "재난현장 활동기반 구축"효과 기대됨
- 중계흡수관(길이 5m)를 제작하여 상수도 배관의 수압이 낮은 도농 복합 도시의 고지대 주거지역 및 도심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소화전과 소방차량을 중계흡수관(길이 5m)으로 연결하여 다른 소방차량에 중계 급수할 경우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 기대됨.



중계흡수관(5m) 제작

중계흡수관 차량 연결